안전 · 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

- 7월 2일 "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" 및 " 산업안전보건법 " 개정안 국회 통과

2009년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한다. 또,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 ·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유해 ·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노동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'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'(이하 " 특별조치법 ")과 ' 산업안전보건법 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의 ▲안전보건관리책임자, ▲안전관리자, ▲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·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격년으로 6~24시간 받아야한다.

프레스 및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 검사주기는 프레스 2년, 리프트 1년으로 할 계획이다.

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프레스 · 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규제는 지난 97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자율화되거나 면제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하게 되었다.

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의 재해가 제조업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, 프레스 · 리프트에 의한 재해도 상승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.

※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은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가 도입된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해가 감소하다 규제가 완화된 ' 97년부터 재해율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프레스에 의한 산재는 1999년 1,310건에서 2003년 2,232건으로 70% 증가했고, 리프트는 88건에서 135건으로 53% 증가하였다.

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개정 내용은 지난 2005년 1월 조정식 의원이 규제복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. 한편, 규제복원 과정에서 19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 ·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, 유해 · 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1.5배 이상 상회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.

내년부터 대부분 석면제품의 사용·수입이 금지된다

- 석면개스킷, 산업용마찰재는 2009.1월부터 사용 등 금지

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·수입·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. 단, 석면 함유량이 0.1%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.

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「석면함유제품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,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이로써,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‘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’, ‘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 ’과 함께,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.
구체적으로 사용 등이 금지된 제품은 ▲압출성형시멘트판(건물 외장재 등), ▲석면방직제품(석면사, 석면포, 석면장갑, 석면로프, 석면테이프 등), ▲석면 전기·전자제품(전원코드 보호재, 모터부품재, 히터보관유지재 등), ▲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(타일 접착재, 금속·콘크리트 접착재, 목재접착재 등) 이다.

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· 수입 · 양도 · 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.

톨루엔,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

- 노동부,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

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그 기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.
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(고시)」을 개정,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.
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(분진)은 5㎎/㎥에서 1㎎/㎥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며,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 3 부타디엔은 10ppm, 벤젠은 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각각 신설된다.

「노출기준」은 매일 반복 노출(1일 8시간, 주 40시간)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로, 경제적 ·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.

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이며,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.

화학물질 698종 중 톨루엔 등 190종은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시설 ·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기준으로 활용(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, 위반 시 1,000 만원 이하의 벌금)되고, 기타 유해인자는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작업환경개선기준으로 제시(권고기준)하고 있다.
그러나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1986년 이후 노출기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과학적 개선근거를 제시해 줄 전문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그동안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.
이에 노동부는 국내에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과 외국에 비해 차이가 큰 유해물질 126종을 선정하여 지난 2005년부터 국내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노·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1차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.

이번 개정안은 1986년 노출기준이 처음 제정된 이후 축적된 건강장해 정보, 외국의 노출기준 개정사례,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사용량 및 발생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된 것으로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.